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7

제안연월일 : 2010. 7. 9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경위

○ 2010. 7. 9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『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』을 위원회안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(2010. 7. 16)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음.

2. 주 문

○ 인천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본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
○ 인천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2011년도 본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
○ 인천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,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

4. 주요골자

○ 위원회명 :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○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1년 (2010. 7. 16~ 2011. 7. 15)
○ 구성인원 : 13인 이내 (위원장 1, 간사 2 포함)

5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 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0조(특별위원회)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둔다.

②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